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자료

희망의 새시대

http://www.motie.go.kr

2013년 9월 17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산업부 지역경제총괄과 박정욱 과장(02-2110-5591), 박신렬 사무관(5606)
기재부 지역예산과 정희갑 과장(044-215-7530), 허 진 사무관(7531)

지역생활권 도입 등 新지역발전정책 제도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 개정 추진

□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"국민에게 행복을, 지역에 희망을" 기본방향으로 하는 **새정부 지역발전정책**(지역희망 프로젝트)의 제도화를 위해 **금년 정기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**(이하 '균특법')의 **전면 개정**을 추진키로 함

○ 이에 따라, 정부는 균특법 개정안을 **9.17(화)부터 입법예고**하고, 10.7(월)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할 예정임

□ 금번 균특법 개정은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에 부응하는 정책방향과 관련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,

①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핵심 공간개념인 **지역생활권** 개념 등을 도입하고 **지역발전계획체계를 재정비**

-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생활공간에 기반한 권역*(**지역생활권 및 지역협력권**)을 **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협의**하여 설정

* 기존 광역경제권은 행정구역 중심의 인위적 설정으로 지역의 체감도가 낮았다는 지적

- 지역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발전계획 수립·추진시 **시·도의 역할**을 강화

② 지역희망 프로젝트*의 **6대 중점 추진방향****을 주요 시책에 반영

- 특히, 지역정책의 사각 이슈였던 지역복지 및 의료, 환경 보존 등에 관한 시책을 신설

* "국민에게 행복을, 지역에 희망을", 지역희망 프로젝트('13.7.18, 지역위)

** ①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, ② 일자리 창출, 지역경제 활력 회복
③ 교육여건 개선, 창의적 인재 양성, ④ 지역문화 융성, 생태 복원
⑤ 사각 없는 지역 복지·의료, ⑥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

③ 지역주민·지자체·중앙부처가 상호 협업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 **지역발전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***을 강화

* 지역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·분석·조정 등 심의사항 확대 및 對중앙행정기관 의견 제시 및 반영 강화

④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에 맞추어 **광역·지역발전특별회계**를 개편

<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추진방향>

구 분	현행	개정안
공간범위	기초생활권-광역경제권-초광역권	지역생활권 - 시·도 - 지역협력권
계획체계	법정계획: 지역발전5개년계획 → 부문별 발전계획,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임의계획: 기초생활권계획, 시·도발전계획, 초광역개발권 구상	법정계획: 지역발전5개년계획 → 부문별 발전계획, **시·도 발전계획** 임의계획: **지역생활권발전계획 (시·군·구)**
예산체계 (계정명)	광역·지역발전특별회계 * 지역개발계정, 광역발전계정	지역발전특별회계 * 생활기반계정, 경제발전계정

참고자료 :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주요 개정내용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박신렬 사무관(☎ 02-2110-560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 고 **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주요 개정내용**

1. 권역 설정 및 개념 정의(제1장 제2조)

□ 개정 필요성

○ 기초인프라, 일자리·교육·문화·복지서비스가 충족되는 주민일상생활 공간으로서 **지역생활권** 정의 필요

○ 광역경제권, 초광역개발권 등 획일적인 기존권역을 시·도간 자율적 협의에 의해 설정하는 **지역협력권**으로 대체

□ 주요 개정내용

① 새정부 **지역발전정책 목표** 재설정

- (기존) 지역경쟁력 강화 ⇒ (개정)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동시 추진

② 기존 "기초생활권"을 **"지역생활권"으로 대체**

- 권역설정은 시(특별시, 광역시 포함)·군·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되 시·도에서 최종적으로 총괄·조정
- 법률에는 정의 규정만 두고 구체적인 공간범위, 유형 구분 등은 지역위 지역생활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설정

③ 기존 광역권, 초광역권은 **시·도 중심 "지역협력권"**으로 전환

- 5+2권역 설정 관련 규정은 삭제
- 시·도간 자율적 합의에 따라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,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변경

2. 지역발전계획 수립체계 정비(제2장 지역발전5개년계획 등)

□ 개정 필요성

○ 지역생활권, 지역협력권 도입 등에 따라 **지역발전계획 체계 재정비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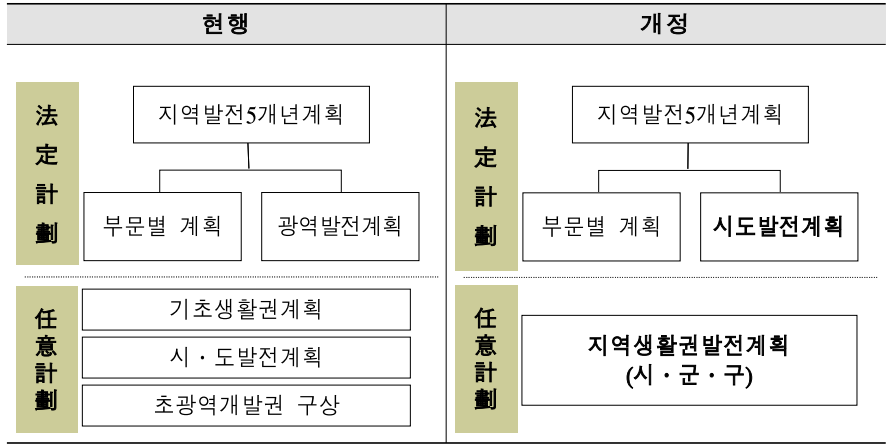
○ 지역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,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 수립 및 추진시 **시·도의 역할 강화**

□ 주요 개정내용

① 시장(특별시장, 광역시장, 행정시장)·군수·구청장이 인근 시·군·구와 연계하여 **지역생활권 발전계획**(임의계획)**을 수립**

② 지역생활권 계획을 고려하여 **시·도 발전계획을 수립**하고 **법정계획화**(현재는 임의계획) 함으로써 실행력 담보

- 광역발전계획, 초광역개발구상은 지역생활권 중심으로 공간권역이 재편됨에 따라 시·도 발전계획으로 대체



3. 주요 시책 반영(제3장 지역발전시책의 추진)

□ 개정 필요성

○ 주민 생활인프라 확충, 지역 교육여건 개선, 환경보존, 지역 복지·의료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 시책 반영

○ 지역희망 프로젝트 중점 추진과제를 주요시책 부분에 반영함으로써 광특회계 지원 근거 마련

□ 주요 개정내용

① 국토의 다원적 개발(초광역개발권, 광역권경제권) 등 획일적 공간단위의 개발시책을 **지역 주도의 추진시책으로 전환**

② 새로운 지역발전정책방향(지역희망 프로젝트)의 **6대 중점 추진분야 반영**

- 특히, 지역정책의 사각 이슈였던 지역복지 및 의료, 환경 보존 등에 관한 시책 신설

현 행	개정안
제10조(국토의 다원적 개발과 지역발전역량 확충)	**제10조**(지역 주도의 발전역량 강화)
제11조(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)	**제11조**(현행과 같음) 다만, 조문내용에 일자리 창출 명기
제12조(지역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진흥)	**제12조**(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)
제13조(삭제)	**제13조**(삭제)
제14조(지역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·물류망 확충)	**제14조**(현행과 같음)
제15조(지역문화·관광의 육성)	**제15조**(지역문화·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존)
< 신 설 >	**제15조의2**(지역복지 및 의료 확충)

4. 지역위 기능 강화 및 광특회계 개편 (법 제4·5장)

□ 개정 필요성

○ 지역위가 부처간 협업, 지역소통의 창구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상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

○ 새로운 지역정책방향에 맞게 특별회계 개편

□ 주요 개정내용

① 핵심 지역정책에 대한 **지역위의 컨트롤타워 기능** 강화

- 심의사항 확대 : 지역생활권계획 심의, 지역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·분석·조정, 지역발전핵심지표의 개발·관리 등
- 對중앙행정기관 의견 제시권한 강화 : 지역발전 기본방향관련 정책, 지역발전 시책·사업, 광특회계 운용 등

② 광역경제권역의 삭제로 기존 광역위 설치 규정은 폐지

③ **광특회계 개편**

- (명칭) 광역·지역발전특별회계 ⇒ **지역발전특별회계**
- (계정 변경) 지역개발계정 ⇒ **생활기반계정**
 광역발전계정 ⇒ **경제발전계정**

④ 광특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**미비점 보완**

- 포괄보조금 편성권을 현행 시·도에서 시·군·구까지 확대
- 사업비 집행잔액의 계정간 사용 불허 및 전용절차 폐지를 통해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역 자율성을 확대